

바람직한 아동학대방지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

박 헤 진**

국 | 문 | 요 | 약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아동학대는 유교적 전통과 함께 대개 ‘가정 내 문제’ 또는 ‘어쩌다 발생하는 (또는 있을 수도 있는) 사건’ 정도로 인식되었던 탓에, 그리고 ‘학대와 훈육의 애매모호한 경계’ 속에서 제대로 된,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웠었다. 그러나 최대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이에 충격을 받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2014년 1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에까지 이르렀다. 동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대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실효성 역시 아직은 기대보다는 회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아동학대는 당사자 간의 특수한 관계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소위 ‘관계기반범죄’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단순히 처벌 위주의 법정책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아동학대의 범죄로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구조와 관계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및 재범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깊이 있는 성찰을 거쳐 바람직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정책을 위한 제언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 주제어 :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관계기반범죄, 치료적 처우

* 본 연구는 2016년도 고려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법학박사.

I. 들어가며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주요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 아동학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사건과 울산 계모사건을 비롯, 인천 11세 소녀 학대 사건, 부천 초등학생 아들 시신훼손사건, 평택 아동 암매장 사건(소위 원영이 사건), 7세 손자 폭행치사사건, 어린이집 학대사건 등 다양하고 잔인할 정도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이전에도 아동학대가 문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유교적 전통과 함께 ‘학대와 훈육의 애매모호한 경계’ 속에서 아동학대는 가정 내 문제 정도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여간 심각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문제로, 또 범죄로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관례 아닌 관례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적·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곤란케 한 주요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사건들로 충격을 받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2014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가져왔다. 동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대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적인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실효성 역시 아직은 기대보다는 회의에 가깝다. 하지만 2016년 2월 28일 정부 여당이 20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강화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며, 정부가 아동학대가 돌봄·교육 등 가족기능 약화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을 올해의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¹⁾, 서울가정법원 역시 지난 5월부터 부모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료를 전제로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²⁾ 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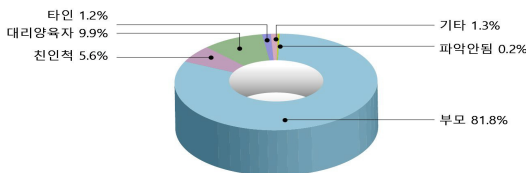
1) 2016.3.29. 연합뉴스, “정부 아동학대 합동발굴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활용”
(<http://v.media.daum.net/v/20160329162934859?f=m>, 2016.7.29.최종방문)

2) 2016.3.27. KBS 뉴스, “법원, 이혼 부모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254773>, 2016.7.29.최종방문)

현시성 있는 테제로 다루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학대는 가해자의 80%가 부모나 조부모 등 가까운 친족³⁾이라는 특수성을 갖는다. 때문에 대부분 학대 초기보다는 상습적·장기적 학대로 인해 일정한 또는 원치 않던 결과가 초래된 이후에야 뒤늦게 인지되거나 문제시되곤 한다. 즉 당사자 간의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행해지는 범죄, 소위 ‘관계기반범죄’⁴⁾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주로 사적인 공간에서 손쉽게 빈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또 당사자 간의 특수한 관계로 말미암아 아동학대는 제때에 제대로 인지되지 못한 채 축소·은폐되기 쉬운 구조를 갖는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예방이나 조기 수사를 기대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설사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피해자가 그에 대한 증거를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비해 제대로 된 양형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생각건대,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아동학대범죄의 ‘관계적 특수성’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단순히 처벌 위주의 법정책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아동학대의 범죄로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구조와 관계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및 재범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엄중한 처벌보다는, 피해자인 아동의 보호와 함께 그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범죄자와 피해자가 원래 가족 구성원 또는

- 3) 보건복지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17쪽, <표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재인용, 2015.



- 4) 여기에서 사용한 ‘관계기반범죄’는 학술적으로 통용된 용어는 아니다. 다만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가정폭력 또는 데이트폭력 등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몇몇 범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된 특징 중 하나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성에 기반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 범죄와 애정 또는 관리·감독상 행위의 경계에서 일종의 면식범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이들 범죄들을 ‘관계기반범죄’ 내지 ‘관계적 범죄’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동학대가 단순히 학대 범죄자와 피해자의 문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피해아동이 성인이 되어 2차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점 역시 간과될 수 없다. 과연 우리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정책은 여기까지 미치고 있는가? 새로 마련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 대응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바람직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정책의 마련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로 한다.

II.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유형화

1. 아동학대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낮은 인식

아동학대는 시대와 문화적 배경 및 사회적 관심 등에 따라 그 범위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나 우리의 경우 그 심각성과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마도 그 원인으로는 유교적 전통과 그에 따른 가부장적인 사고, 그리고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관습 등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아동학대와 훈육과의 경계가 희미한 탓에 우리 주변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이나 훈육을 위한 폭언 등이 행해지더라도 그것은 단지 그 집안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당연한 또는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축소, 은폐되기 일쑤였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도 일부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즉 우리에게 은연중에 아동학대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소위 아동학대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콩쥐팍쥐나 신데렐라의 계모처럼 피해아동과 아무런 유대의 고리가 없는 특정인 또는 흉악한 범죄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구석에서 웅크리며 떨고 있는 피해아동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다. 아동학대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상황 등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통념은 자연스레 아동학대를 인식하고 그에

대해 판단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설사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의 때’라고 바꿔 생각하거나, ‘자식 예쁘다고 오냐오냐하면 버릇이 없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하고 그 나름의 당위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애가 얼마나 버릇이 없으면 또는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럴까’ 하고 되려 피해아동에게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상해나 사망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아동학대 현실이 버젓이 실제로 존재하고 일상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2. 아동학대의 정의 및 범위

가. 아동학대의 정의 및 범주화의 어려움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어떻게 이해되고 어느 정도까지 범주화할 수 있는가? 명확한 판단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학대의 정의와 범주를 너무 좁게 해석하게 되면, 그 범주에 이르기 전까지 아동은 신체의 안전 및 장래의 성장에 대한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생명조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 반대로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게 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과 가정 내 자율적 질서를 방해하고, 곧바로 국가 공권력이 가정 내로 쉽게 투입되게 됨으로써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급기야는 가정의 해체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⁵⁾ 최근 잇달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논란 여론과 언론은 국가 공권력의 이른 개입과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학대 개념과 범주의 무조건적인 확장은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타의 범죄와 달리 아동학대는 주로 부모와 자식, 위탁보호자와 피위탁 아동, 봉사자와 아동, 교사와 아동 등 상호 간의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한다는 특수성을 지니기 때문에, 같은 행위라도 그들 간의 관계나 용인 여부, 학대의 정도, 행위자의 의사,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

5) 김용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제22권 제3호, 2015, 591쪽.

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⁶⁾ 또 일회적이라기보다는 상습적·장기적으로 일상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다는 점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만큼 친밀한 관계 내에서는 양해 또는 수인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대가 높은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처벌에 의한 단절적 관계보다는 당사자 간 관계의 회복 내지 극복에 대한 노력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거시적 관점의 접근이 요청된다.

나. 현행법상 아동학대의 개념적 정의 및 문제점

아동학대는 말 그대로 ‘아동’에 대한 ‘학대’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부모나 양육자의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우발적인 신체적 상처를, 넓은 의미에서는 아동발달상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모든 환경이 아동학대로 이해되고 있기는 하다.⁷⁾ 아동의 연령대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와 어느 정도를 학대라고 판단할 것인지는 시대적 특성과 각 나라의 문화적, 정서적 차이에 의해 다르게 인식될 수 있고 또 정의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학대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라 할 것이다. 1999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보호자나 신뢰관계인 또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가혹한 처사, 성학대, 방임 또는 보호의 태만 및 상업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착취로서, 그 결과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및 존엄성에 실제적인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초래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국제협약인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⁸⁾ 제19조는 “아

6) 예컨대 아동이 매우 나쁜 일을 했을 때 체벌을 가하는 것이 신체적 학대인지 아닌지, 부모가 갑자기 경제력을 상실하여 일시적으로 거처할 곳이 마땅치 못하여 노숙자에 가까운 상황에 놓였을 때 이를 방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게다가 정서적·정신적 학대의 경우 객관적 기준을 내세워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만약 부모가 아동에게 애정표현의 하나로서 안거나 함께 입욕하는 경우, 부모의 성적 의도의 유무에 따라 성적 학대가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아동학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개념적 정의와 범주화에 대해서는 논쟁중이라는 지적은 池谷和子, 『アメリカにおける家族の崩壊と『子どもの権利』: 児童虐待防止法制度を素材として, 東洋法學 第57권 第3호(森田明教授 退職記念号), 東洋大學法學會, 2014, 182쪽.

7) 오미희,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일일인문학, 제68집, 2015, 361-362쪽.

8) 이를 통해 아동권린이 모든 국가에서 입법화되고 제도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동 협약은 가장 성공한 인권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이재연/황옥경/김효진, 아동과 권리 제30

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 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사나 착취”를 아동학대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정 아동복지법(2013.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동법 제3조 제1호)으로 보면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동법 제3조 제7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7조는 ‘금지행위’라는 표제 하에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 유기행위와 방임행위,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음행매개 및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등과 구걸과 곡예 등을 시키는 행위 등을 학대행위의 예시로서 기술하고, 이와 더불어 아동에 대한 양육의 알선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및 아동에게 사용될 목적의 금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동법 제71조). 또한 지난 2014년 1월에 제정된 신설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1.28. 제정, 2014.9.29. 시행)은 제2조 제3호에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개념을 그대로 준용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를 피하고 해당 유형들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면서 동조 제4호에서 ‘아동학대범죄’를 별도로 두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로 형법상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를 범하였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위반되는 죄를 범한 경우, 또는 이러한 아동학대행위를 통하여 아동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율한다.

문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들을 살펴봐도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헌법상으로도 ‘아동’이라는 용어나 아동유사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연소자의 근로보호’(제32조 제5항)와 ‘국가의 청소년의 복지향상의무’(제34조 제4항)만이 규정되어 있다. <표1>에서도 확인되지만, 하위 법률 역시 각 입법목적에 따라 아동, 연소자, 미성년자, 소년, 영유아, 청소년 등 유사개념들을 사용하면서, 그 대상연령을 달리 하거나 같은 연령에 대해서도 다

른 호칭을 부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⁹⁾ 설사 용어와 규율대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법률이 그 입법취지나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접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표1〉 현행법상 ‘연령’에 대한 상이한 규율태도

규율 법률	호칭	대상 연령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자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자(제3조)
청소년보호법		19세 미만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19세 미만자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로교통법	어린이	13세 미만의 사람
민법	미성년자	19세 미만자
근로기준법	연소자	18세 미만자
공직선거법	선거권자	19세 이상 국민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모자보건법		출생 후 6세 미만자

‘학대’ 역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정서적 방임 등으로 분류하지만, 형법 제273조에서 말하는 학대란 “신체적·정신적 가해행위를 통하여 유기에 준할 정도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로 이해된다.¹⁰⁾ 즉 형법상 학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9) 같은 문제의식에서 아동의 범위를 입법을 통해 통일적으로 확정하고 그 발달단계에 따른 용어의 차별화를 통한 적합한 지원과 대책 마련을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는 강동욱/문영희, 아동학대-법과 제도, 청목출판사, 2011, 17-23쪽 참조.

10) 대법원은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하면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4.25. 선고, 2000도223 판결)

다.¹¹⁾ 하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고, 동시에 그와는 별도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강간죄, 추행죄,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죄, 공갈죄, 강요죄, 손괴죄 및 그 치상의 죄 등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동법 제2조 제4호가~하목)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특수한 유형’이고, 신분범인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범죄유형들이 과연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차지하더라도- 형법상 학대와 함께 아동복지법상의 학대 및 금지행위까지 포함함으로써 단순 계산식 확장을 가져왔다는 비판과 함께 그 행위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아동학대를 포섭하지 못하고 어이없이 축소시킨 셈이 되고 말았다.¹²⁾ 이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별개로 굳이 ‘아동학대범죄’ 개념을 설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전환과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자, 양자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할 것이다.¹³⁾

〈표2〉 관련 법률에 따라 상이한 ‘학대’ 개념

규율법률	학대의 주체 및 개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아동의 보호자/아동 유기 또는 방임
아동복지법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11) 김슬기,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07쪽.
- 12) 아동학대범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는 류부근,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 제2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142-153쪽 참조.
- 13)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글로는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법학논총 제21권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448쪽, 461쪽 참조. 이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의 형사제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법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그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김성규, 아동학대에 관한 형법적 대응의 의미와 과제, 형사정책 제2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119쪽.

규율법률	학대의 주체 및 개념
	- 아동의 보호자/아동 유기 또는 방임
청소년보호법	- 학대를 통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발생
형법	- 보호자 또는 감독자/학대

2. 아동학대의 유형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의할 경우,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및 방임으로 구분되고 있다.

가. 신체적 학대

학대의 가장 기본적 행태에 해당하는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 신체 가해행위 및 도구 등을 활용한 간접적 신체 가해행위 등이 포함된다.¹⁴⁾ 특히 생후 36개월 이하의 유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적 학대로 본다고 한다.¹⁵⁾ 구체적으로는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등으로 기능손상이 되거나, 아동을 흔들거나, 물어뜯기, 질식사시키기 등이 포함되어 멍이나 화상, 골절, 뇌손상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 초래하게 되는 행위이다.¹⁶⁾ 특히 영아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흔들려진 아기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은 영아를 심하게 흔들 때 나타나는 것으로, 학대의 증거를 겉으로 남기지 않고 뇌출혈, 타박상, 실명, 정신지체, 골절, 발작, 심지어 사망 등의 심한 손상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한다.¹⁷⁾

나.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

14) 보건복지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 124쪽.

15) 조민상/장석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발생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7호, 2014, 196쪽.

16) 日本子ども家庭総合研究所, 「子ども虐待対応の手引き」, 有斐閣, 2013, 4쪽.

17) 도미향/남연희/이무영/변미희, 아동복지론(제3판), 공동체, 2015, 253-276쪽 참조.

협, 감금 등을 말한다.¹⁸⁾ 아동의 인격·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명백하게 아동에게 가해진 잔혹하고 학대적인 부당한 대우를 포함하며,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행위, 고의적·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상업적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¹⁹⁾ 정서적 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²⁰⁾

다.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는데²¹⁾, 최근 형사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적 학대는 대부분 여아에게 발생하고, 학대자들의 약 7% 정도는 아동이 잘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다고 한다. 가정 내 성적 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가정 외 성적 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을 통해 발생한다.²²⁾ 대체로 아동 성학대는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작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거나,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²³⁾ 성학대는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지만, 성학대가 다른 학대유형보다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고 있다

18) 보건복지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 124쪽.

19) 임홍수/박송춘, 부모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제5권 제1호, 2016, 133쪽.

20) 조민상/장석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발생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7호, 2014, 196쪽.

21) 임홍수/박송춘, 부모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제5권 제1호, 2016, 134쪽.

22) 조민상/장석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발생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7호, 2014, 196쪽.

23) 조민상/장석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발생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7호, 2014, 196쪽.

는 점에서 중요하다.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이나 부부관계의 문제 및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²⁴⁾

라. 방임 및 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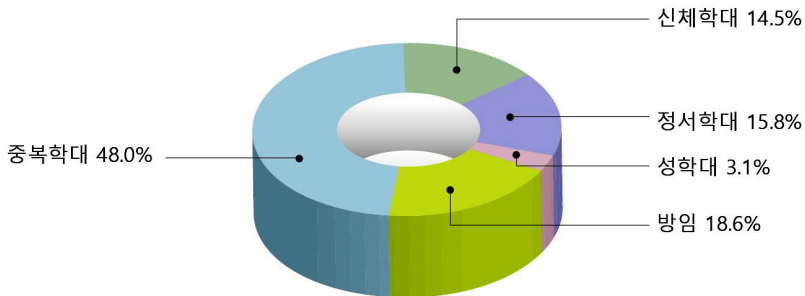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뜻하며, 세부적으로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그리고 유기로 구분할 수 있다.²⁵⁾ 신체적 방임은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기간 불결한 주거환경에 방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 정서적 방임은 양육자가 아동에게 관심이 없어서 성장발달에 유익한 격려를 해주지 않는 것, 즉 정서적 양육이 거부되어 양육자와의 대화나 신체접촉이 거의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교육적 방임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학습활동에 필요한 자료나 준비를 챙겨주지 않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의료적 방임은 예방접종 및 기타 의료적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로서 태아기에 약물 및 알코올에 노출시키는 것도 포함된다.²⁶⁾ 또한 성적 방임은 부모나 성인의 성관계나 그런 내용을 담은 활자 및 전파매체 등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임의 극단적 형태가 유기에 해당하는데, “아동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나 아동의 삶의 질을 저하시킴으로써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²⁷⁾

24) 보건복지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 126쪽.

25) 보건복지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 124쪽.

26) 임홍수/박송춘, 부모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제5권 제1호, 2016, 133쪽.

27) 이호중,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체계 개선방향, 저스티스 통권 제134호, 한국법학원, 2013, 8쪽.

〈표3〉 아동학대의 유형들²⁸⁾

Ⅲ.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드러난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방향성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 및 기본적 시각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의의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일본과 달리 아동학대만을 규율하는 독립된 법률 없이 관련 규정들이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여러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법집행상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²⁹⁾. 이런 차에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들에 놀란 여론의 비난과 비판이 빗발치자 기존 아동복지법의 미비점들을 수정·보완하여 아동학대사태의 개입에 관한 전체적인 틀을 새로이 만든 것이 바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그리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대해 규율을 핵심내용으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은 이제껏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28) 보건복지부,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5, 126쪽 <표4-12> 재인용.

2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각각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다.

있는 근거와 환경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사후개입을 통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학대행위자 및 피학대아동에 대한 조치를 가능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³⁰⁾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기본적 시각 및 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의 정의나 범주 그리고 처리특례 등에 있어서 아동복지법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등을 준용하고 있고, 특히 본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본법은 아동학대를 범죄로 취급, 형사처벌을 통한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형법의 성격을 갖는다. 아쉬운 점은 이 부분에서 노정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방식에 있어서 형벌적 규제의 유의미성³¹⁾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른바 아동학대와 같은 ‘관계기반 범죄’의 경우, 학대행위는 결코 단일하지 않고 여러 유형의 학대가 중복·중첩되어 발생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되면서 서서히 또는 점차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아동은 자연스럽게 학대행위를 학습하고, 또 다른 형태의 학대, 폭력으로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³²⁾ 따라서 여타의 범죄에서처럼 강력한 제제수단을 통한 해결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자신의 보호자(였던 자) 등과의 격리 내지 형사처벌로 인해 갑자기 심리적·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와 분리되는 것은 피해아동의 입장에서조차 결코 바람직하다거나 올바른 해결이라 할 수 없다고

30) 박주영,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단기간의 분리보호 및 친권제한조치,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2015, 354-355쪽;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과 대부분의 가해자가 부모라는 점 그리고 피해아동의 원가정 회복을 위한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이 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하는 글로는 원혜옥,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43쪽.

31) 이에 대한 깊은 고찰은 김성규, 아동학대에 관한 형법적 대응의 의미와 과제, 『아동학대의 현상과 형법 그리고 형사정책』, 2015 한국형사정책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15, 27-32쪽 참조.

32) 김용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아동학대 처벌 관련법 통합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2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613쪽.

할 것이다.³³⁾ 아동학대범죄가 가진 특수성을 외면하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가해자-피해자 관계와 이들을 둘러싼 제환경적 요인 및 그 이후까지도 고려하여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적 처우,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관리·감독까지도 염두에 둔 거시적·종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동법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즉각적·단기적 대응에만 주력하고 있는 듯하다.³⁴⁾

2. 주요 내용

이러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기본적 태도는 주요 내용들에서 다시금 확인된다. 우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제1조)으로 내세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총 6장 6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제4-제9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상 특례’(제10조-제58조)로 대별가능한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3) 이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글로는 김잔디,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와 동향, 서울법학 제22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494쪽; 강동욱,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방안,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2016, 59쪽; 배태순, 해체된 가정의 아동들, 그들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 국내 해체가정의 아동보호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제9호, 2000, 227-244쪽; 이호중,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문제점과 전문법원제도의 도입방안-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친권제한 등의 유기적 연계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219쪽 참조.

34) 배화옥, 아동학대 유형별 재발생 특성과 관련요인에 대한 생존분석, 아동권리연구 제11권 제3호, 아동권리학회, 2007, 389-407쪽; 문성호, 학대받는 아동과 가족의 처우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2집,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996, 52-66쪽;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법학논총 제21권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463-459쪽; 김형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피해아동 발견 및 사후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제5권 제2호,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08, 22-38쪽; 양혜원, 아동학대와 부모의 친권에 관한 문제-영·미제도의 시사점, 가족법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3, 272쪽 등 여러 선행연구들도 단순 처벌보다는 피해아동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보호와 행위자 유형에 따른 개별적 처우 및 치료적 관점을 강조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관련

첫째,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경우에는 무기, 5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처하고,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행위자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유죄판결시 200시간 이하의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집행유예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수강명령 외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제4조-제8조).

둘째, 검사는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의 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위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결과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9조)

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관련

첫째, 아동학대 신고의무대상자를 확대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직무관련자가 직무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 더불어 신고자등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불이익조치의 금지와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였다.(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62조의2)

둘째,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할 것을 규정하였다.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제지, 격리,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등)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행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제15조)

셋째, 임시조치의 내용으로 피해아동이나 가족 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접근금지, 상담, 교육, 요양시설에의 위탁이나 구치소 유치 등과 함께 친권행사의 제

한 및 정지를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부당한 친권행사를 견제함과 동시에 임시 후견인의 지정을 통해 피해아동이 법정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제19조-제23조).

넷째,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피해자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인 제도 및 결정 전 조사제도를 두고, 영상물의 촬영·보존, 심리의 비공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등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25조, 제44조)

다섯째,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검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고, 보호처분 대상인 경우 송치하는데, 이 경우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할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26조-제30조)

여섯째,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신설을 통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및 보호처분의 실질화를 꾀하였다.(제47조)

일곱째,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하여는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며, 신고의무자가 신고나 비밀엄수의무 등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조사 등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9조, 제61조, 제62조)

3. 평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적 특례와 더불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특별(형)법으로서 복합적·종합적 형태³⁵⁾를 보인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아동학대의 포괄적 유형화 규정,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친권제한 및 상실 등의 조치, 응급조치·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등을 통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자 권한의 확대 및 공조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35) 이와 같은 복합적 성격의 법률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강경위주의 정책은 문제의 일시적 해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아동학대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Ⅳ. 아동학대방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설정 및 향후 과제

1.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요청

가.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 이해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는 당사자 간의 특수한 또는 특별한 관계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관계범죄’이다. 동시에 당사자 간의 친밀도, 정서, 포용 정도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경계범죄’이기도 하다. 또한 여타의 범죄와 달리 발생한 범죄 자체에 집중, 단죄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 없고³⁶⁾, 생애에 걸쳐 범죄의 재발과 그 후유증을 염려해야 하는 범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회적이고 엄중한 처벌보다는 당사자 간 진정한 관계의 회복 및 아동의 정서함양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나. 개인적 범죄에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

기존에는 아동학대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가정 내에 발생한 일은 되도록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가족적 정의에 대한 고려가 일면 작용하였다. 때문에 설사 신체적 학대의 징후가 발견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넓은 이해를 발휘하거나 훈육 내지 징계로서 정당화(예컨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하거나 혹은 남의 집 가정사 내지 양육법쯤으로 치부함으로써 문

36) 이 점에서 동일한 관계기반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노인학대 등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여타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처벌 등이 주효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나, 아동학대의 경우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간적 관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절적 방법은 바람직한 문제해결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를 축소 내지 희석시켜왔다. 그러던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은 아동학대가 범죄이며,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일회적·단기적·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단순한 처벌 중심의 대응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아동학대 범죄는 당사자 간의 관계에 기반한 신분범죄이자 상습범죄고 면식범죄이며, 어느 범죄보다도 재발위험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살인과 같이 극단적인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 즉 폭행이나 상해, 모욕이나 명예훼손, 정신적 학대 등과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행해지더라도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고, 조기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시에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아동학대범죄가 주로 부모, 친족 등에게서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노인학대·배우자폭력 등 관계기반범죄의 대부분이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순히 행위자의 처벌, 친권의 제한 및 상실 등의 조치에 기대기보다는 관련자 전체에 대한 역학조사와 함께 이들에 대한 교육, 지도, 상담 및 치료가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아동학대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뿐만 아니라 개별 행위자와 피해자에 적합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함은 물론,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심리적·환경적 제요인의 개선과 함께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정기적으로 지도·관리·관찰을 요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2. 학대의 정도(반복성·지속성) 등에 따른 개별적·단계적·차별적 접근

가. 학대행위의 예방 및 조기발견- 아동학대 전문교육, 상담 및 관찰 프로그램 마련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기반범죄인 아동학대는 적시에 발견 내지 인지가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많은 연구들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특별히 ‘관계자들의 신고의무’와 함께 ‘누구든지 신

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효과 역시 의문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늘리고 이들의 신고에 의존하는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발생한 것이니만큼 조기 발견이 가정 내 아동학대에 비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아동학대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학대 사실과 문제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³⁷⁾. 만약 아동학대가 의심스럽거나 특정 학대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상담과 함께 지역 내 전문가에 의한 정기적인 관찰 및 회복적 사법(RJ)³⁸⁾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우연적·일시적 아동학대가 일상화·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검사의 결정 전 조사(제25조) 및 조건부 기소유예(제26조), 그리고 보호관찰(제36조)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하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과 친권제한 등의 강제조치가 투입되는 것은 오히려 아동의 정서적 안정 및 유대관계 유지를 저해하고, 원(原)가 정으로의 회복이 아닌 단절 및 악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37) 아동복지법은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조치 마련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매우 추상적이고 원론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6년 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가정교육 전문가 양성 및 가정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된 바 있지만, 구체적 시행 및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38) 원래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모색되었던 회복적 사법은 최근 활발한 논의와 연구에 힘입어 확대경향을 보이고 있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 관련자들이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자나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범죄대응’으로 이해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관계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특수성을 가진 아동학대 범죄에 있어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 반복적·고위험성 학대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치료적 처우 및 후속적 사후관리

대체로 아동학대가 외부에 인지되는 경우는 반복적·지속적·만성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예방적 고려보다는 적절하고 확실하고 또 적극적인 ‘즉각적·사후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가해자·피해자의 관계 및 학대의 진행 정도,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별적·단계적인 플랜마련이 요청된다. 예컨대, 가정 내 학대의 경우에는 친권자 등이 아동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가하였거나 그로 인한 2차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들의 친권을 정지하되 사안의 심각성 또는 개선 여하에 따라 연장 또는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아동학대에까지 이르지 않는 않지만 그 친권의 행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친권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³⁹⁾ 그러나 친권의 제한 및 정지는 아동의 양육과 보호에 있어 형벌 못지않은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거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가해자·피해자 분리’보다는 학대의 정도·기간·빈도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성격, 상태 및 가해자의 태도, 반성과 교화가 능력에 따라 순차적·단계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확실한 처벌 못지않게 가해자의 학대유형별로 그에 적합한 심리치료나 정신 치료, 약물치료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치료적 처우를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관계회복을 도모한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⁴⁰⁾. 생각건대,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내지 치료적 처우를 먼저 행하고, 학대의 정도가 중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 가해자 중에서 자신의 아동학대 경험으로 말미암아 2차적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근원⁴¹⁾을 살피는 것 역시 가해자에

39) 김용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아동학대 처벌 관련법 통합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2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605쪽.

40) 이를 위한 방안으로 문제해결법원의 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제해결법원의 도입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이승호, 문제해결법원의 도입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51-78쪽 참조.

대한 치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 또는 친권의 제한 및 정지가 행해지는 동안에는 시설에의 위탁이나 대리양육,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의 입원 또는 입소(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등), 친권을 대신 행사해 줄 임시후견 인제도의 활용(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다양한 유형의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피해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되⁴²⁾ 더불어 지속적·정기적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하여금 아동의 상태를 관찰·조사하여 아동학대의 2차적 피해방지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더불어 보호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정신적·신체적 치료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사회 내(또는 기관 내) 학대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미 많은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 내지 신고대상자들이 사실상 아동학대의 대응방안의 최첨병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가정 내 학대만큼이나 은폐 및 축소가 가능하고, 직무상 행위로 정당화하기 쉽다. 따라서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하려면 현재의 비밀보장 및 불이익금지 규정⁴³⁾ 외에 또 다른 확실한 보완조치, 예컨대 신고자의 신변보호프로그램이나 익명제보의 활성화, 손해배상 등의 여러 제도적 보호조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제2차 피해를 방지하며, 신고의무자 내지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인지한 아동학대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면 좀 더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개입 내지 적시개입 및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기적·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교

41) 아동학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체적 학대의 경우, 양육태도나 양육지식의 부족,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관계에서의 스트레스, 개인적 성격 및 기질상 문제 등이 학대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김민지, 아동학대의 원인, 그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형사정책 제28권 제1호, 2016, 63-70쪽.

42) 같은 건지의 글로는 강동욱,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방법,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2016, 72쪽; 허남순/고윤순, 한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위한 특례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정복지연구 제37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5, 18쪽 참조.

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0조의2에서 ‘불이익조치의 금지’를, 그리고 제62조 ‘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와 제62조의2 ‘불이익조치금지 위반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육프로그래를 운용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아동학대가 일상적·무의식적·습관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가정 내 학대에 비해 사회 내 아동학대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관계단절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의 회복 및 2차적 피해의 방지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피해아동이 이때의 트라우마로 인해 다른 기관으로 옮긴 이후에 또는 성장과정에서 대인기피 등 사회적 관계 맺기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가정 내·외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임시조치 등을 적극 활용하고 차후에 형사처벌을 진행하도록 하되, 개입 초기부터 전문적·적극적인 치료적 처우가 투입됨으로써 조속한 문제해결과 함께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지원체계 구축과 지속적 사후관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은 제28조 제1항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제29조)과 함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제28조의2)도 의무화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8조 역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하여 보호 중이거나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동법이 이러한 제반조치들을 두고 있는 이유는 아동학대범죄가 형사처벌이나 여타의 조치로써 단숨에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후속조치가 더욱 중요한 특수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올해 초 정부 여당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외에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논의하였고, 대법원 역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감독사건 제도’를 도입한

다고 밝힌바 있다.⁴⁴⁾ 그러나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은 형식적·관례적인 후속조치에 그치기 쉽고, 그 실효성 역시 의문이라 할 것이다. 보호자의 태도나 표면적인 모습만으로 양육능력을 판단하고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심신상태, 부모의 경제·취업상황, 친·인척과의 관계,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기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⁴⁵⁾

생각건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재학대의 예방과 가정의 유지 및 피해아동의 심신안정을 위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 진행하되, 일회적·단기적·형식적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에 의한 정기적·전문적인 모니터링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아동이 위탁가정이나 시설에 보호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의 기간이 추가 연장되어야 하고, 친권이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후관리는 정확하고 정기적으로 피해아동과 가족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되,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여 아동학대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관계 기관의 협력 및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관련 기관 간에 문제해결을 두고 일종의 ‘선긋기’를 통해 책임을 떠넘기려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재범방지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지원센터와 가정법원 및 유관 서비스 기관들이 일종의 ‘책임공동체’ 내지는 ‘유기적 협력체’로서 상호 협력해야 한다. 즉, 아동학대 사건이 외부에서 인지된 순간, 바로 유관기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검·경에 의하여 학대가해자에 대한 신분조회 및 전과조회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의 행동반경을 즉시 포착함으로써 빠른 검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경찰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및 정신보건전문의, 그리고 응급구조원 등이 출동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의 재빠른 분리와 함께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어 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함께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진단 및

44) “與,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후관리 강화법 제정키로”, 2016.1.19.(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19_0013845406&cID=10301&pID=10300, 2016.7.28. 최종방문); “법원, 아동학대 사건 사후조치까지 직접 관리한다”, 2016.4.12.(<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41214332024355&outlink=1>, 2016.8.1. 최종방문)

45) 배상균,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대응에 관한 검토-일본 후생노동성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90쪽.

심리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이전에도 피해자 및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조치(예컨대, 위탁가정에서의 위탁이나 아동시설에서의 입소, 가정 내 자원봉사자의 투입,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의한 공공부조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적지원, 병원에서의 입원 또는 치료 등)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안정화 및 가정의 정상화 등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 처우 및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도 주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기관과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시 보호시설이나 아동치료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고, 피해아동이 다니는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의 경우 피해아동이 심리치료 등을 받는 동안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보충수업이나 교우관계의 유지 등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기적 협력은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V. 나가며

어떤 문제를 볼 때는 결과만 보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진 전체 과정을 봐야 한다. 특히나 아동학대와 같이 특정 내지 특수 관계에 기반하여 은연중 또는 확연하게, 간헐적·반복적·지속적으로 일상화·상습화되어 범죄와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들은 그 심각성에 비해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고 범행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계속범’의 양상을 띤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사자 간의 ‘관계성’으로 인해 원상회복 내지 관계회복이 여타 범죄에 비해 용이하다는 특수성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양면성을 갖는 아동학대범죄를 단순히 접근하여 무조건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예방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이라 할 수 없다.⁴⁶⁾ 현행 우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46)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강조하는 듯하다. 배화옥, 아동학대 유형별 재발생 특성과 관련요인에 대한 생존분석, 아동권리연구 제11권 제3호, 2007, 한국아동권리학회, 405쪽; 배상균,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대응에 관한 검토-일본 후생노동성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85-87쪽; 원혜옥, 아동학대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발생 이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분리 내지 격리를 통하여 범죄의 재발을 막고, 행위자의 처벌에 치중하면서도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재범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아동학대의 개념이다. 무엇인 문제인지가 명확해야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과 같은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구별에 대해서는 보다 정치한 법적 논증을 요한다 할 것이다.⁴⁷⁾ 생각건대,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미시적 관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先 개선, 後 엄중 처벌’로 접근하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가해자-피해자 간 관계회복 내지 트라우마의 극복’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정기적·지속적·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꾸준한 사후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아동학대의 유형, 학대의 정도·기간·빈도, 가해자의 학대원인 및 피해자의 연령·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과 함께 유관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⁴⁸⁾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재범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55쪽 참조.

47) 같은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글로는 류부곤,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 제2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141쪽; 김슬기,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08쪽.

48) 영국의 경우 슈어스타트아동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res)를 중심으로 아동보육과 교육, 보건서비스, 가족지원, 부모현장방문, 고용지원, 정보제공, 부모에 대한 조언과 지지, 네트워크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양소남, 영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 조기개입과 학대아동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7호,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2012, 38쪽 이하 참조), 프랑스의 경우 중앙 피위험 아동관찰소와 데파르트먼트 피위험 아동관찰소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 및 사법인 등이 연합하여 피 위험아동을 위한 공익연합체(GIPED)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나 단체들의 업무를 통합하여 평가하고 지도하고 있다(여하윤, 프랑스에서의 아동학대방지 관련 법제, 법학논문집 제36집 제3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168-169쪽 참조).

참고문헌

- 강동욱,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방법,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2016.
- _____,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법학논총 제21권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 강동욱/문영희, 아동학대-법과 제도, 청목출판사, 2011.
- 김민지, 아동학대의 원인, 그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형사정책 제28권 제1호, 2016.
- 김성규, 아동학대에 관한 형법적 대응의 의미와 과제, 형사정책 제27권 제1호, 한국 형사정책학회, 2015.
- 김슬기,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07쪽.
- 김용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제22권 제3호, 2015.
- 김잔디,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와 동향, 서울법학 제22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김형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피학대 아동 발견 및 사후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제5권 제2호,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08.
- 도미향/남연희/이무영/변미희, 아동복지론(제3판), 공동체, 2015.
- 류부곤,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 제2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 문성호, 학대받는 아동과 가족의 처우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2집,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996.
- 박주영,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단기간의 분리보호 및 친권제한조치,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2015.

- 배상균,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대응에 관한 검토-일본 후생노동성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 배태순, 해체된 가정의 아동들, 그들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나: 국내 해체가정의 아동보호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제9호, 2000.
- 배화옥, 아동학대 유형별 재발생 특성과 관련요인에 대한 생존분석, 아동권리연구 제11권 제3호, 아동권리학회, 2007.
- 양소남, 영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 조기개입과 학대아동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7호,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2012.
- 양혜원, 아동학대와 부모의 친권에 관한 문제-영·미제도의 시사점, 가족법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3.
- 여하운, 프랑스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제, 법학논문집 제36집 제3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 오미희,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 제68집, 2015.
- 원혜옥,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이승호, 문제해결법원의 도입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 이재연/황옥경/김효진, 아동과 권리 제30권 제6호, 아동학회지, 2009.
- 이호중,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문제점과 전문법원제도의 도입방안-피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친권제한 등의 유기적 연계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 _____,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체계 개선방향, 저스티스 통권 제134호, 한국법학원, 2013.
- 임홍수/박승춘, 봄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복지상당교육연구 제5권 제1호, 2016.
- 조민상/장석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발생 현황 분

석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7호, 2014.

허남순/고윤순, 한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위한 특례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정복지연구 제37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5.

日本子ども家庭総合研究所, 『子ども虐待対応の手引き』, 有斐閣, 2013.

池谷和子, アメリカにおける家族の崩壊と『子どもの権利』: 児童虐待防止法制度を素材として, 東洋法學 제57권 제3호(森田明教授 退職記念号), 東洋大學法學會, 2014.

A Suggestion for the criminal policies to prevent child abuse*

Park Hye-Jin**

The child Abuse is a physical, emotional, sexual violence and abandonment, neglect which the protector do harm to the children health and welfare. Child abuse is on a steady rise in Korea, but in the foggy notion or belief of domestic common issue or rare occurrence, we have unwittingly overlooked child abuse. However,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returns reports, its long term effect is beyond our comprehension and Mothers and fathers are the most prevalent perpetrators; They represent approximately 7-80% of all cases. Recently, we have a Special Act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it is to be welcomed with both arms open. The Child Abuse Act takes on a child welfare perspective, focusing on the return of the family as it was before abuse. In addition, the act is valuable because it seeks to establish a system to coordinate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and the punitive measure against the assailant, and because it strengthened the punishment against the assailant and enhanced protection for the abused child by revising criminal case procedures for such cases.

I think with child-abuse, the law is double edged. Child abuse is special offence which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such as parents-child or Day care center teacher-child, etc. so, We need to deal with the issue from a more strategic and longer-term perspective. For the policy to prevent child abuse, personal therapeutic treatment for child-batterer, children victim and their members of family and so on is worth certain punishment. The Planning Methodology in child abuse protection introduced in this paper and the discuss which flows from it should be

* This article is supported by a Korea University Grant.

**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Ph.D. in Law.

useful in guiding future research efforts for a number of reasons.

❖ Keyword: child abuse(child battering), The offence of cruelty to childre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 Child Welfare Act, relation-base crime, therapeutic treatment

